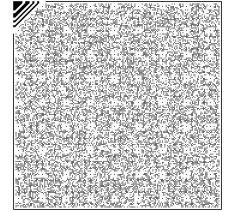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기총량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개정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와 관련하여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항 ==

가. 배출허용총량 이전 시기 조정(제4조)

- “ 다음연도 1월말 ” → “ 다음연도 3월말 ”

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규정 삭제(제5조)

- “ 공인인증서 사용 ” → “ 「전자서명법」 에 따른 전자서명수단 사용 ”

붙임 관보 제19924호(환경부고시(제2021-11호)) 1부. 끝.

환경부 장관

수신자 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금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전북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대기총량과장), 서울특별시(대기정책과장), 대구광역시(기후대기과장), 부산광역시(기후대기과장), 인천광역시(대기보전과장), 대전광역시(미세먼지대응과장), 울산광역시(환경보전과장), 광주광역시(기후환경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환경정책과장), 경기도지사(북부환경관리과장),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경기도지사(환경안전관리과장), 충청남도지사(푸른하늘기획과장), 충청북도지사(기후대기과장), 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환경관리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안전과장), 경상남도지사(기후대기과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주무관 이현민 행정사무관 최재웅 과장 전결 2021. 1. 21. 차은철

협조자 파견직 이선중

시행 대기관리과-310 (2021. 1. 21.)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관리과(5층)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6908 팩스번호 044-201-6915 / light@me.go.kr / 대국민 공개